



선 람	기 관 의 장

공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발행·편집 /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48452)
☎ 607-4071 / FAX 607-4719

공 포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12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3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13호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조례 폐지조례] 7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14호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15호
[부산광역시 남구 창업 지원 조례] 13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16호
[부산광역시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16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17호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

공									
람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18호
[부산광역시 남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23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19호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20호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21호
[부산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28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22호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23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24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25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26호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8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2024년 3월 12일 제326회 남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4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12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

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 목표 및 방향
2.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
3.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6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 입법평가는 이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달에 실시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2024년 3월 12일 제3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4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13호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3월
12일 제3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4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14호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
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예술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의 확산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남구의 위상 제고
3.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

제3조(구성 및 명칭) ①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된

다.

②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각 단체”라 한다)를 두고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남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 남구립 오륙도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3. 부산광역시 남구립 올드합창단(이하 “올드합창단”이라 한다)

③ 각 단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안무가, 발성트레이너 및 80명 이내의 합창단원
2. 여성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발성트레이너 및 40명 이내의 합창단원
3. 올드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발성트레이너 및 40명 이내의 합창단원

제4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예술단을 총괄하며, 각 단체를 지휘·감독한다.

② 예술단의 공연 등의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자격) ① 지휘자, 반주자, 안무가, 발성트레이너(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 또는 무용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합창단원은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고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소년소녀합창단 :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남구 내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여성합창단 :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남구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집일 기준 65세 이하의 여성
3. 올드합창단 :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남구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집일 기준 60세 이상의 사람

제6조(선발) ① 지휘자 등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선발한다.

② 합창단원은 실기 및 면접으로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선발한다.

③ 제2항의 전형위원은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3명 이내, 해당 단체의 지휘자,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선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촉 및 임기) ①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해촉) 단장은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단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간 6회 이상 출연 또는 연습에 결석한 경우
5. 제5조제2항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합창단원에만 해당한다)

6.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7. 단장이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을 통솔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은 품위유지, 기량향상, 단원 간의 화합에 노력하여야 하며 남구 주최·주관 행사, 각종 대회·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연습 및 공연) ① 각 단체의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공연 등을 가질 수 있으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을 위한 각종 공연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지원) 단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합창단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립 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소관부서장, 각 단체의 지휘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

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후원회) 각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③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 단체의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기간은 제7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위촉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창업 지원 조례를 2024년 3월 12일 제3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4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15호

부산광역시 남구 창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4조에 따른다.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업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이 부

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업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창업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현황 및 전망
2. 창업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3. 창업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4. 창업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5. 창업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창업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기업 제품의 홍보·마케팅, 물류·구매 등 지원
 3. 창업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5. 그 밖에 창업 지원과 관련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창업기업 제품 등의 우선 구매) 구청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창업 지원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 및 협력해야 한다.

제10조(창업 관련 현황 등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창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창업 관련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2024년 3월 12일 제3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4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16호

부산광역시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

생을 줄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해 배출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집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자원 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면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소비 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③ 구청장은 민간 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약해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실천사업과 민·관 협력활동

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2024년 3월 12일
제3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4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17호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기관과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마.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
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
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시행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줄이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
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등 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회의
2. 부산광역시 남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공공기관 1회용품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를 2024년 3월 12일
제3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4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18호

부산광역시 남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능 기부와 연계한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민의 역량과 잠재력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멘토(Mentor)”란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멘티(Mentee)”란 멘토의 지도·조언을 받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부산광역시 남구민을 말한다.
3. “멘토링(Mentoring)”이란 멘토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활용하여 결연을 맺은 멘티를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멘토링 지원 사업) 구청장은 멘토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멘토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 능력 및 예체능 능력을 발전시키는 사업
2. 진로·진학 및 취업을 위한 상담·조언 사업
3.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자립 및 올바른 성장 지원 사업
4.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사업
5.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멘토링 관련 학교·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보험 가입 및 지원) 구청장은 멘토링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멘토의 경력 인정 등) 구청장은 멘토의 활동 실적을 관리하며,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하거나 활동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멘토링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모범이 되는 기관·단체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조(멘토링 사업 평가) 구청장은 멘토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멘토링 사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4년 3월 12일 제3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4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19호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위기청소년 문신 제거
10. 자해·폭력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 흉터 제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4년 3월 12일 제3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4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20호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지원 기준 및 지급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를 2024년 3월 12일 제3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4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21호

부산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제4조(장수축하물품 지급 내용)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장수축하물품은 50

만원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5조(장수축하물품 지급 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제6조(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 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제7조(장수축하물품 지급 절차)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안내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당해연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가진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게 한다.

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제8조(장수축하물품 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기준 장수어르신이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장수축하물품 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자 관리 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조례 시행 전 이미 100세 이상이 된 사람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수어르신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4년 3월 12일 제3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4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22호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을 “운영비 등 지원”을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4년 3월 12일 제3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4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23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자”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4년 3월 12일
제3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4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24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7명”을 “10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
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을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으
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소관업무 부서장”을 “지명업무 담당 팀장”으로, “소관업무 담당
팀장”을 “지명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변경 또는 조정”을 “변경 및 폐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4년 3월 12일 제3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4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25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월 900,000원”을 “월 1,200,000원”으로 하고, “월 200,000”을
“월 3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호(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4년 3월 12일 제3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4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26호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우암·감만”을 “남구”로 한다.

별표 중 우암·감만 건강생활지원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동계당로 368(우암동)	부산광역시 남구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